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16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정태호 · 허성무 · 이정문
김 윤 · 임문영 · 이연희
이학영 · 윤후덕 · 이주희
김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제1항제2호의6 신설).

법률 제 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에 제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6.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에 대하여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2조(센터의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2의5. (생략) <u><신설></u>	제92조(센터의 사업) ① ----- -----. 1. ~ 2의5. (현행과 같음) <u>2의6.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 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에 대하여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약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u>
3. · 4. (생략) ②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